

2024. 7. 25.(목)  
보도시점 브리핑 시작(14시 30분) 이후

배포 2024. 7. 25.(목)

##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<sup>4인 가구 기준</sup> 6.42%로 역대 최대 인상

- 생계급여 선정기준 '24년 183만 3,572원 → '25년 195만 1,287원(4인 가구) -
-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,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-

### < 요약본 >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7월 25일(목)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,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
\* 중앙생활보장위원회: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(차관급),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

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,913원 대비 6.42% 인상된 609만 7,773원,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%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,445원 대비 7.34% 인상된 239만 2,013원으로 결정하였다.

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(생계) 32%, (의료) 40%, (주거) 48%, (교육) 50%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.
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'24년 183만 3,572원에서 '25년 195만 1,287원으로 인상했다.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책제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.

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·가구원수별 1.1 ~ 2.4만 원 인상하고,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~360만 원 인상했다.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% 인상했다.

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.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,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.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,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.

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,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,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(월 6천원 → 1.2만원)한다.

#### <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자동차<br>소득환산율<br>4.17% 적용<br>기준 | ▲ 1,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<br>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| ▲ 2,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<br>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|
| 생계급여<br>부양의무자<br>기준            | ▲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<br>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 | ▲ 부양의무자 연 소득 1.3억 원 또는<br>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|
| 노인<br>근로소득<br>공제               | ▲ 75세 이상 추가공제(20만 원+30%)                       | ▲ 65세 이상 추가공제(20만 원+30%)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의료급여<br>건강생활유지비                | ▲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▲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< 상세본 >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7월 25일(목)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 위원회를 개최하여,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다.

\* 중앙생활보장위원회: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(차관급),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

### □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

-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,913원 대비 6.42% 인상된 609만 7,773원, 수급가구 중 약 74%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,445원 대비 7.34% 인상된 239만 2,013원으로 결정하였다.

\* (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) ('16) 4.00% → ('17) 1.73% → ('18) 1.16% → ('19) 2.09% → ('20) 2.94% → ('21) 2.68% → ('22) 5.02% → ('23) 5.47% → ('24) 6.09%

-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,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.

## <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>

(단위: 원/월)

| 가구원 수      |      | 1인        | 2인        | 3인        | 4인         | 5인        | 6인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준<br>중위소득 | '24년 | 222만8,445 | 368만2,609 | 471만4,657 | 572만9,913  | 669만5,735 | 761만8,369 |
|            | '25년 | 239만 2013 | 393만 2658 | 502만 5353 | 609만 7,773 | 710만 8192 | 806만 4805 |

### □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

-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.

○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.

-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(생계) 32%, (의료) 40%, (주거) 48%, (교육) 50%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.
-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,287원, 의료급여 243만 9,109원, 주거급여 292만 6,931원, 교육급여 304만 8,887원 이하이며,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.

### <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>

(단위: 원/월)

| 가구원 수            |      | 1인         | 2인         | 3인         | 4인         | 5인         | 6인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교육급여<br>(중위 50%) | '24년 | 111만4,223  | 184만1,305  | 235만7,329  | 286만4,957  | 334만7,868  | 380만9,185  |
|                  | '25년 | 119만 6,007 | 196만 6,329 | 251만 2,677 | 304만 8,887 | 355만 4,096 | 403만 2,403 |
| 주거급여<br>(중위 48%) | '24년 | 106만9,654  | 176만7,652  | 226만3,035  | 275만358    | 321만3,953  | 365만6,817  |
|                  | '25년 | 114만 8,166 | 188만 7,676 | 241만 2,169 | 292만 6,931 | 341만 1,932 | 387만 1,106 |
| 의료급여<br>(중위 40%) | '24년 | 89만1,378   | 147만3,044  | 188만5,863  | 229만1,965  | 267만8,294  | 304만7,348  |
|                  | '25년 | 95만 6,805  | 157만 3,063 | 201만 141   | 243만 9,109 | 284만 3,277 | 322만 5,922 |
| 생계급여<br>(중위 32%) | '24년 | 71만3,102   | 117만8,435  | 150만8,690  | 183만3,572  | 214만2,635  | 243만7,878  |
|                  | '25년 | 76만 5,444  | 125만 8,451 | 160만 8,113 | 195만 1,287 | 227만 4,621 | 258만 738   |

### < 생계급여 >

○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,572원에서 2025년 195만 1,287원(6.42%)으로,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,102원에서 2025년 76만 5,444원(7.34%)으로 인상하였다.

-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.

◎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(4인 가구)는 올해 생계급여(선정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32%)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.

-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.42%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,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한편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'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.

-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%를 적용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.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\*하여,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.

\* (현행) 1,600cc, 200만원 미만 → (개선) 2,000cc, 500만원 미만

- ◎ 소득이 150만 원인 B씨 가구(4인 가구)는 **자동차(소나타 1,999cc, 450만 원)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(1,600cc 미만인면서 200만 원 미만)을 초과하여, 차량가액이 100%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(소득인정액: 150만 원+450만 원=600만 원)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.**
- 2025년부터는 **2,000cc 미만, 500만 원 미만 자동차**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**4.17%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**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,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**월 26만 원의 생계급여**가 지급된다.

-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'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'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, 부양의무자 기준을 '연 소득 1.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'로 **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.**
- 근로·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%를 적용하고,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'20만 원+30%'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.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,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.

- ◎ 소득이 월 100만 원인 68세 C씨(1인 가구)는 **근로소득 공제 30%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(100만 원-30만 원)으로 생계급여 1만 원**을 받고 있다.
- 2025년부터는 **65세 이상 노인**에 대한 **근로소득 추가공제(20만 원+30% 공제)** 혜택을 받게 되어, **소득인정액이 56만 원(100만 원-44만 원)으로 감소,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.**

-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## < 주거급여 >

-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·가구별 1.1만 원~2.4만 원(3.2~7.8%) 인상하였다.

### < 2025년도 기준임대료 >

(단위 : 만 원/월)

| 구분 | 1급지<br>(서울) |        | 2급지<br>(경기·인천) |        | 3급지<br>(광역시·세종시·<br>수도권 외 특례시) |        | 4급지<br>(그외 지역) |    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인 | 35.2        | (+1.1) | 28.1           | (+1.3) | 22.8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+1.2) | 19.1           | (+1.3) |
| 2인 | 39.5        | (+1.3) | 31.4           | (+1.4) | 25.4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+1.4) | 21.5           | (+1.4) |
| 3인 | 47.0        | (+1.5) | 37.5           | (+1.7) | 30.2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+1.5) | 25.6           | (+1.7) |
| 4인 | 54.5        | (+1.8) | 43.3           | (+1.9) | 35.1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+1.8) | 29.7           | (+1.9) |
| 5인 | 56.4        | (+1.9) | 44.8           | (+2.0) | 36.3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+1.9) | 30.7           | (+2.0) |
| 6인 | 66.7        | (+2.1) | 53.1           | (+2.4) | 42.8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+2.2) | 36.3           | (+2.3) |

\* 괄호는 '24년 대비 증가액

\*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, 가구원 수가 8~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%를 가산

-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% 인상하였다.

### < 2025년도 수선비용 >

| 구분   | 경보수(3년) | 중보수(5년)  | 대보수(7년)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'24년 | 457만 원  | 849만 원   | 1,241만 원 |
| '25년 | 590만 원  | 1,095만 원 | 1,601만 원 |

◎ C씨(1인 가구)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,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는 매월 21만6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.

- 2025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, 1인 가구 기준 1.2만 원 인상되어, 내년부터는 매월 22만8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.

## < 교육급여 >

-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,000원, 중학교 67만 9,000원, 고등학교 76만 8,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% 수준 인상하고,
-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.

### <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(단위: 원) >

| 구분          |   | '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4년    |                  | '25년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액    | 전년대비             | 지원금액    | 전년대비            |
| 교육활동<br>지원비 | 초 | 415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61,000 | +46,000 (+11.1%) | 487,000 | +26,000 (+5.6%) |
|             | 중 | 589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54,000 | +65,000 (+11.0%) | 679,000 | +25,000 (+3.8%) |
|             | 고 | 654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7,000 | +73,000 (+11.2%) | 768,000 | +41,000 (+5.6%) |
| 교과서비        | 고 |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입학금수업료      | 고 | 연도별·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·수업료 전액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- ◎ D씨(3인 가구)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,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65만4천 원 지원받았다.
- 2025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, 내년부터는 2만5천 원 인상된 67만9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.

□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「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」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- 의료급여 제도는 '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,
- ▲고령화 추세,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, ▲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\*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다.

\* 급여일수 상한제, 연장승인 제도, 선택의료급여기관 등

- 이에 따라,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,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.

①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.

-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. 다만,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\*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\* 아동, 임산부, 산정특례자(중증질환자, 희귀·중증난치질환) 등

- 또한, 의료급여 상한일수\* 산정 시, 연간 외래·입원·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, 과다 의료이용 유형,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다.

\* 중증·희귀난치질환 365+90일, 만성질환 380+75일, 기타질환 400+90+55일

- 이에 따라, 외래·입원·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.

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.

- '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.

| 현 행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| 개 편   |        |       |       |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1종 외래  |        |        | 2종 외래  | 약국   | 1종 외래 |        |       | 2종 외래 | 약국 |
| 의원     | 병원, 종합 | 상급 종합  | 의원     |      | 의원    | 병원, 종합 | 상급 종합 | 의원    |    |
| 1,000원 | 1,500원 | 2,000원 | 1,000원 | 500원 | 4%    | 6%     | 8%    | 4%    | 2% |

\* 2.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,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(5천 원)

- 그간의 물가,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,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,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\*이 나타났다.

\* (1인당 진료비) 건강보험 대비 3.3배(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)

(외래일수) 건강보험 대비 1.8배(월 36일 vs 건보 20일)

-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,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.

### ③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 확대한다.

-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.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\*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여,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고 비판받아 왔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.

\*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,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

□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(위원장)은 마무리 발언으로 “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,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 6.42%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” 라고 하면서,

○ “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,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” 라고 밝혔다.

- <붙임> 1.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
2.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 
3. 기준 중위소득 개요  
4.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
5.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 사례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보건복지부<br>기초생활보장과 | 책임자 | 과 장 | 장재원 (044-202-3051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윤석범 (044-202-3054) |
| <의료급여>        | 보건복지부<br>기초의료보장과 | 책임자 | 사무관 | 이웅채 (044-202-3066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과장  | 김승일 (044-202-3091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사무관 | 박정현 (044-202-3094) |
| <주거급여>        | 국토교통부<br>주거복지지원과 | 책임자 | 사무관 | 이광성 (044-202-3088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과장  | 김도곤 (044-201-453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주무관 | 문언진 (044-201-3359) |
| <교육급여>        | 교육부<br>학생맞춤통합지원과 | 책임자 | 과장  | 하진혜 (044-203-6134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건혁 (044-203-6529) |



□ **법적근거**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

□ **구 성**

-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
  - 당연직(6인): 복지부 장관(위원장) 및 국토부 · 교육부 · 기재부 · 행안부 · 고용부 차관
  - 위촉직(10인): 전문가(5인), 공익을 대표하는 자(5인)

□ **위원회 기능 및 역할**

-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  -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
  -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
  -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

| 구 분 |     | 성 명 | 현소속 및 직위               |
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당연직 |     | 조규홍 | 보건복지부 장관(★위원장)         |
|     |     | 진현환 | 국토교통부 제1차관             |
|     |     | 오석환 | 교육부 차관  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김윤상 | 기획재정부 제2차관             |
|     |     | 고기동 | 행정안전부 차관               |
|     |     | 김민석 | 고용노동부 차관               |
| 위촉직 | 전문가 | 석재은 |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(★부위원장) |
|     |     | 김태완 |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    |
|     |     | 신영석 |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      |
|     |     | 남원석 |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    |
|     |     | 장덕호 |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       |
|     | 공익  | 송인규 |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            |
|     |     | 정창률 |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     |
|     |     | 임정숙 |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         |
|     |     | 김혜승 |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|
|     |     | 김현아 |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    |

□ (목적)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

\* 근거법령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.9.7 제정, 2000.10.1. 시행  
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.12.30. 개정, 2015.7.1. 시행

**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(목적)**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(수급자 선정)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

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\* 이하

\* 생계급여 32%, 의료급여 40%, 주거급여 48%, 교육급여 50%

② 부양의무자(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
\* 주거('18년)·교육급여('15년)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
생계('21년)는 예외기준(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·재산 9억) 외 기준 폐지

□ (급여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자활·장제·해산 등 총 7종

- (생계) 기준 중위소득 32%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(보충급여)
- (의료) 질병,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(진찰, 치료 등) 제공
- (주거) 임차료(임차가구), 주택 개량(자가가구) 지원(국토부 소관)
- (교육) 학생 수급자의 입학·수업료, 학용품비 등 지원(교육부 소관)
- (해산·장제) 출산시 1인당 70만원,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
- (자활)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(절차) 상담·접수(읍면동) → 자산조사·보장결정, 급여 지급(시군구)

□ (예산) '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(국비 기준)

\* 생계 7.5조원, 의료 8.9조원, 주거 2.7조원, 교육 0.2조원, 자활 0.7조원, 해산장제 426억원

- (개요)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6조의2(기준 중위소득의 결정)

- ① 기준 중위소득은 「통계법」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)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.
-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.

□ 現 산정 방식('21년~)

- (원칙)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

$$n\text{년 기준 중위소득} = n-1\text{년 기준 중위소득} \times (1+\text{기본증가율}) \times (1+\text{추가증가율})$$

\* 추가증가율은 6년간('21~'26) 한시 적용

- (기본증가율) 최근 3년(n-3~n-5년)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

※ 다만, 차년도(n년)나 당년도(n-1년)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.

- (추가증가율) ①기준 중위소득-가금복 간 격차 해소, ②개편된 가구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('21~'26)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

- (통계원 변경) '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('20.7월, 제60차 중생보 결정)

- (격차 해소)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('18 기준 12.49%) 단계적 해소(6년간)

\*  $(n-3\text{년 가금복 중위소득} / n-3\text{년 기준 중위소득})^{1/6}$

- (가구균등화 지수) 1.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

\*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.37 → 0.4 / 2인 가구 0.63 → 0.65 등

\*\*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

## 붙임 4

##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

### □ 총 74개 사업(2024년 기준)

- 고용부 4개, 교육부 7개, 보건부 4개, 국토부 4개, 농림부 2개, 산림청 2개, 문체부 4개, 법무부 1개, 복지부 27개, 질병청 2개, 여가부 14개, 통일부 2개, 해수부 1개

| 연번 | 부처 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고용부 | 국민취업지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    |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    |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    |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교육부 | (기초생활) 교육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    |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    |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(학비 및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) |
| 8  |     | 국가장학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    | 평생교육바우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    |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    |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보건부 |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    |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('22년 신설)                |
| 14 |     | 독립유공자 손·자녀 생활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    | (보훈대상자) 요양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 | 국토부 | (기초생활) 주거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 |     | 행복주택 공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 |     | 통합공공임대주택 융·출자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 |     |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(22~24년 지급)              |
| 20 | 농림부 | 학교우유급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1 |     | 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2 | 산림청 |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3 |     | 산림일자리(공공산림가꾸기, 산림재해일자리, 산림서비스도우미)     |
| 24 | 문체부 |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5 |     | 통합문화이용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6 |     | 스포츠강좌이용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7 |     | 예술인 생활안정자금(융자)                        |
| 28 | 법무부 | 법률 구조 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9 | 복지부 | (기초생활) 생계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0 |     | 해산장제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1 |     | 긴급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연번 | 부처 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2 |     | 장애수당(기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3 |     | 장애수당(차상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4 |     | 차상위계층 지원(차상위본인부담 경감)                     |
| 35 |     | <b>(기초생활) 의료급여</b>                       |
| 36 |     | 장애인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7 |     |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8 |     |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                     |
| 39 |     | 자활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0 |     |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1 |     | 노인실명예방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2 |     | 발달재활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3 |     | 언어발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4 |     |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|
| 45 |     |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 |     |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|
| 47 |     |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8 |     |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9 |     | 치매 검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0 |     |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1 |     |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2 |     |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3 |     |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4 |     | 아동발달지원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5 |     |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6 | 질병청 |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7 |     |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(부양가족 생계비)                    |
| 58 | 여가부 |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(청소년인터넷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) |
| 59 |     | 청소년특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0 |     |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(양육비,교육비)              |
| 61 |     |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(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)          |
| 62 |     |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3 |     |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(디지털미디어피해청소년회복지원)      |
| 64 |     |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(위기청소년특별지원)                   |
| 65 |     | 아이돌봄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6 |     |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7 |     |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8 |     |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(내역사업)               |
| 69 |     |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0 |     |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(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비)     |
| 71 |     | 미혼모부 초기지원(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)           |
| 72 | 통일부 | (북한이탈주민) 의료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3 |     | (북한이탈주민)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                |
| 74 | 해수부 | 어촌생활돌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1 [사례 1]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

- 소득이 없는 A씨 가구(4인 가구)는 올해 생계급여(선정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32%)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.
-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.42%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,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
| 현행       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생계급여 월 183만원 수급 | ⇒ 생계급여 월 195만원 수급 |

2 [사례 2]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

- 소득이 월 150만원인 B씨 가구(4인 가구)는 자동차(소나타 1,999cc, 450만원)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(1,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)을 초과하여, 차량가액이 100%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(소득인정액: 150만원+450만원=600만원)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.
- 2025년부터는 2,000cc 미만,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.17%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,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일반재산 소득환산율(4.17%) 적용 자동차기준)<br>배기량 1,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<br>차령 10년 이상 또는<br>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| ⇒ (일반재산 소득환산율(4.17%) 적용 자동차기준)<br>배기량 2,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<br>차령 10년 이상 또는<br>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|

|    | [소득평가액] |   | [재산의 소득환산액]             |   | [소득인정액] |   | [생계급여 수급]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현행 | 150만원   | + | 450만원<br>(450만원 × 100%) | = | 600만원   | : | 선정 제외                 |
| ↓  |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| ↓                     |
| 개선 | 150만원   | + | 19만원<br>(450만원 × 4.17%) | = | 169만원   | : | 생계급여 선정,<br>월 26만원 수급 |

### 3 [사례 3] 노인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

-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C씨(1인 가구)는 근로소득 공제 30%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(100만원-30만원)으로 생계급여 월 1만 3천원을 받고 있다.
-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(20만원+30% 공제) 혜택을 받게 되어, 소득인정액이 56만원(100만원-44만원)으로 감소, 생계급여 월 20만 5천원을 수급하게 된다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(노인 근로·근로사업소득 공제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65세 이상 노인) 30% 공제</li> <li>■ (75세 이상 노인) 20만원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공제</li> </ul> |  | <b>(노인 근로·근로사업소득 공제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<b>(65세 이상 노인)</b> 20만원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공제</li> </ul> |  |

  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div>현행</div> <div>↓</div> <div>개선</div> | <div>[소득]</div> <div>100만원</div> | - | <div>[근로소득 공제]</div> <div>30만원<br/>(100만원 × 30%)</div> | = | <div>[소득인정액]</div> <div>70만원</div> | : | <div>[생계급여 수급]</div> <div>월 1만 3천원 수급</div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div>100만원</div>                 | - | <div>44만원<br/>(20만원 + (80만원 × 30%))</div>              | = | <div>56만원</div>                    | : | <div>월 20만 5천원 수급</div>                     |